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금액 요건을 갖추신 분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재생부지 제공자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음.
- ※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기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기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참조)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구분	안산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③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인 안산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추천 가능합니다.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0.15.)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원
 -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기]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접수)일에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 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지역별 거주요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 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금융결제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 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 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결과가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추천자는 주택형별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당첨자로 선정 또는 특별공급 통합예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통합예비당첨자로 선정 시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 부여는 추첨 방식입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은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상기 배정세대 및 예비추천인은 각 기관에서 본 사업주체에 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20-1번지
- 홈페이지 : <http://www.as-thehue.com>
- 분양문의 : 1600-4410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3]

안산 한신더휴 특별공급 배정 현황

구분	배정 세대		근거자료	
	배정	예비		
일반(기관추천) 5세대	국가유공자	5	2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장기복무 제대 군인	3	1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3	15	
	중소기업 근로자	7	35	
	장애인	8	40	

[첨부4]

안산 한신더휴 견본주택 위치 및 운영안내



■ 홈페이지(사이버 모델하우스)
<http://www.as-thehue.com>

■ 문의전화 : 1600-4410

■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견본주택은 관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대체 운영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또는 홈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